

COMMENT  
Industry

Analyst

김도하

doha.kim@sk.com

02-3773-8876

## 보험

## IFRS17 기준서 발표: No surprise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가 2021년 도입될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를 공식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주요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향후 예정된 일정과 회계상 보험부채 및 수익비용 인식의 방법, 주요 이슈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그 세부사항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 IFRS17 기준서 발표: 이미 알려진 수준의 내용으로 파악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는 2021년 도입될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다. 논의의 초기단계에서 언급되었던 내용과 비교하면 국내 보험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나,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최근까지 꾸준히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 보험부채: '보험계약집합' 단위로 보험부채 인식

IFRS17의 보험부채는 이행현금흐름과 계약서비스마진 (CSM)의 합으로 산출된다. IASB의 기준서 원문에 따르면, 보험사는 유사한 리스크에 노출되어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이를 다시 최초인식 시점의 손실부담 여부에 따라 '집합'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집합을 보험부채 인식의 단위로 간주한다. CSM에 대해서는 지난해 한국회계기준원이 밝힌 바와 같이 공정가치법으로 측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초안 대비 전환시점의 자본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 수익과 비용: 외형은 축소되지만 이익은 안정적으로 인식할 전망

수입보험료를 전부 매출로 인식하는 현행과 달리 IFRS17에서는 수익 및 비용에서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의 보장서비스에 수반되는 대가만을 인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top line의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투자요소가 수익과 비용 모두에서 제거되므로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CSM 상각에 따른 수익 인식으로 손익 변동성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직 실무적용에 대한 조정은 필요해

기준서 발표 직전인 최근에 이슈가 된 사항이 있다. 갱신형 보험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시, 현금흐름 평가기간은 주계약 만기인지, 특약 갱신주기인지의 문제이다. 특약에서 손실을 보는 보험사와 이익을 내는 보험사 간의 입장차이가 존재하므로, IASB 회의에서 실무적용 이슈로써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기준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 중 실제 적용과정에서 민감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존재하므로, 2017년 4분기 중에는 IASB 주관의 회계기준 적용 지원 TF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준서는 발표되었으나, 실무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세부 조정과 그로 인한 예상 결과의 변동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 IFRS17 기준서 발표: 이미 알려진 수준의 주요 내용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이하 IASB)는 2021년 도입될 보험계약 회계기준 (이하 IFRS17)의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다. 기준서는 논의의 초기단계에서 언급되었던 내용과 비교하면 국내 보험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나,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최근까지 꾸준히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확정된 기준서에 대해 2018년 중순까지 영향분석 및 의견수렴, 심의 등을 거친 후 K-IFRS의 공표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향후 예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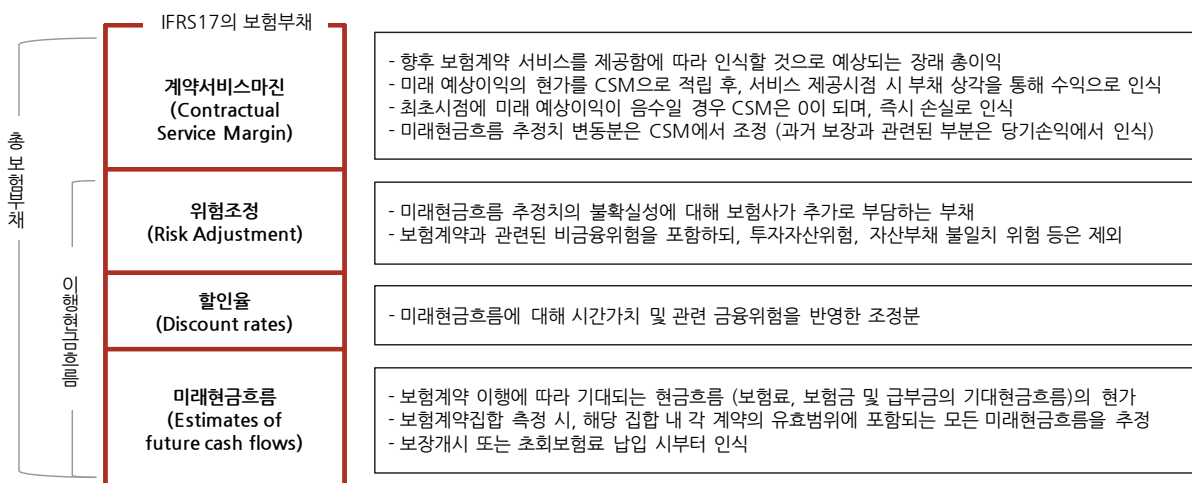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SK 증권

주: 상세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내용 (1): 보험부채

IFRS17 의 보험부채는 이행현금흐름 (=미래현금흐름+시간가치+위험조정)과 계약서비스마진 (Contractual Service Margin, 이하 CSM)의 합으로 산출되며, 매 보고기간 말의 할인율과 가정으로 재측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IASB 가 공개한 기준서 원문에 따르면,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인식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집합'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해야 한다. 우선 유사한 리스크에 노출되어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이를 1) 최초인식 시 손실계약인 집합 (onerous contracts)과 2) 최초인식 시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할 유의적 위험이 없는 계약의 집합, 3) 그 외 집합 등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집합을 보험부채 인식의 단위로 간주한다. 집합에 따라 손익의 인식 방식은 상이한데, 손실계약집합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손실을 바로 인식하고 그 외 집합은 미실현이익을 부채에 계상한 후 보험계약 서비스가 제공된 (계약의무가 종료된) 시점에 이익으로 인식한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있어서 적절한 이행현금흐름을 포함할 수 있다면, 집합이나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범위에서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집합 단위로 분배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 IFRS17에서의 보험부채 구조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보험연수원 SK 증권

## 주요 내용 (2): 수익과 비용

보험수익은 현행과 크게 다른 방식으로 인식된다. 수입보험료를 전부 매출로 인식하는 현재와 달리, IFRS17에서는 투자요소 (저축보험료)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의 보장서비스에 수반되는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용에서도 투자요소를 제거하고 동기간의 지급보험금과 사업비 (직접비의 상각 및 간접비)를 인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외형축소는 나타날 수 있으나 이것이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CSM의 상각에 따른 수익 인식으로 손익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래 현금흐름 추정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기손익이나 CSM에서 조정을 거치지만, 금융위험이나 시간가치의 변동분은 (가칭) 보험금융수익 또는 비용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s)이라는 새로운 항목으로써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될 예정이다.

### IFRS17에서의 포괄손익계산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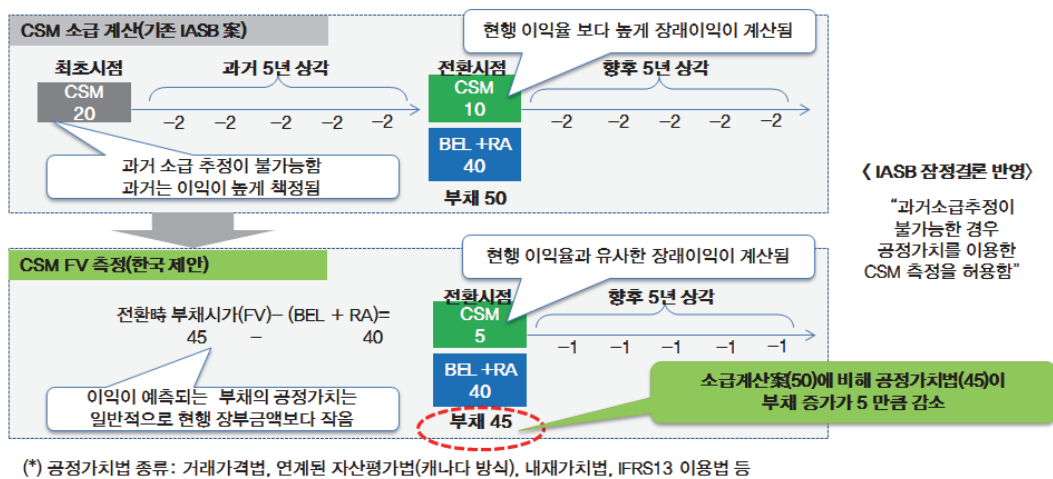
	FY1	FY0
보험수익	9,900	8,600
보험서비스비용	(8,600)	(7,800)
보험서비스손익	1,300	800
투자이익	7,800	7,200
보험금융비용	(7,400)	(6,700)
순투자손익	400	500
기타손익	(300)	(200)
당기순이익	1,400	1,100
기타포괄손익	200	300
투자이익	2,100	1,800
보험금융비용	(1,900)	(1,500)
총포괄손익	1,600	1,400

자료: IFRS Foundation 자료 참고 SK증권

### 주요 내용 (3): 전환시점의 CSM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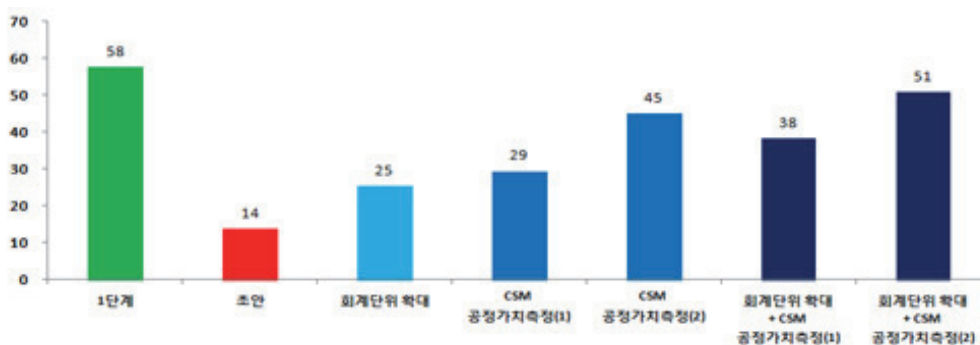
CSM 은 향후 인식될 보험계약의 수익이지만 우선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전환시점에 보험사의 부채 증가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그러나 2016 년 11 월 한국회계기준원이 발표했던 대로 한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CSM 산출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권이 보다 확대되었다. 기준서에는 ‘소급법의 적용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 공정가치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기준서 C6 항, (a)). 즉 과거 계약의 서비스마진을 측정할 때 완전소급법 적용 대신 전환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 CSM 산출에 공정가치법 적용 시 기대되는 효과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 IFRS17 도입에 따른 국내 생명보험사 자본 변화: 초안 대비 자본 감소부담 완화 예상



자료: 보험연구원

## 최근의 이슈 (1): 평가기간은 주계약 만기인가, 특약 갱신주기인가?

IFRS17 도입 시 ‘갱신형 보험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기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주계약에 특약이 부가된 한 계약을 예로 들어보자. 주계약은 40년 만기의 장기계약이지만 특약의 갱신주기는 3년일 때, 미래현금흐름의 평가기간은 40년인가, 아니면 갱신시점인 3년인가? 특약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 평가기간을 40년으로 가져가면 불리한 미래현금흐름이 산출될 것이고, 특약에서 수익이 나는 보험사의 경우 평가기간을 3년으로 가져가면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출될 것이다. 입장에 따라 견해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IASB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참고로 한국회계기준원은 2017년 4분기 개최될 IASB 주관의 회계기준 적용 지원 TF 회의를 통해 실무적용 이슈를 논의하고 결론을 공유할 계획이다.

## 최근의 이슈 (2): 2017년 말 LAT 강화 예정

IFRS17 기준서 발표와 동시에, 한국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LAT) 개선 방안을 2017년 6월 말까지 확정하고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기준 변경 이전의 선행적·단계적인 자본확충이 목적인 평가이므로 할인을 하향 조정 등을 통한 강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2017년 1월 발표했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고안 (현 RBC 제도의 단계적 강화안)을 일부 변경해 6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 Compliance Notice

- 작성자(김도하)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4 단계(6개월 기준) 25%이상→적극매수 / 10%~25%→매수 / -10%~+10%→중립 / -10%미만→매도